

농막,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

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-86호(2025. 08. 21., 제정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(농막 등의 범위)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)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(농막 등의 범위)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

1. 주차공간 면적 : 13.5m²(1면)
2. 데크 면적 :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.5미터를 곱한 값

부 칙

이 고시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